

<p>서 기능직 중 “지방사무보조원”을 “지방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p> <p>본 조례안은 運營委員會의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14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運營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본 조례안은 保健社會委員會 李達源議員 외 35명 의원이 제출한 안을 제14회 정기회 제3차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運營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p> <p>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은 서울特別市議會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있어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안건과 사안에 대한 의원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최초 선임된 議長과 副議長 임기만료 후의 잔여임기를 재정하기 위하여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議長 또는 副議長の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議長 또는 副議長은 다음 회기에서 議長 또는 副議長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p> <p>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參 照)</p> <p>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일반직 6급란 정원 “29”를 “3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지방전기 또는 지방기계주사 1”을 신설하고, 소계란 정원 “95”를 “96”으로 하며, 기능직 8등급란 정원 “7”을 “12”로, 정원내용중 지방전기원 “1”을 “2”로, “지방통신원2”를 신설하고, 지방사무보조원(타자)2”를 “지방사무원(타자)2”로, 지방방호원 “1”을 “3”으로 하며, 기능직 9등급란 정원 “14”를 “22”로, 정원내용중 지방기계원 “1”을 “2”로, “지방전기원 1”을 신설하고, “지방사무보조원(타자)4”를 “지방사무원(타자)4”로, “지방사무보조원(필기)1”를 “지방사무원(필기)7”로 하며, 기능직 10등급란 정원 “34”를 “35”로, 정원내용중 지방기계원 “1”을 “2”로, “지방사무보조원(타자)15”를 “지방사무원(타자)15”로, “지방사무보조원(필기)7”을 “지방사무원(필기)7”로, 소계란 정원 “60”을 “74”로 하며, 총계란 정원 “182”를 “197”로 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의회사무처 : 182명”을 “의회사무처 : 197명”으로 한다.</p> <hr/> <p>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p> <p>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에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p> <p>제37조를 제37조의2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7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p>
---	---

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7.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3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梁敬淑議員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議員 財務經濟委員會 梁敬淑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부모 등이 서울特別市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特別市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으로 하고,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하고, 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의 시 시민장학금 신설을 골자로 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시 市長이 정하기로 한 시민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범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례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거주자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시민장학금에

있어서 일회적 성격인 입학금에 한하여 지급토록 한 것은 타 지역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大學校 附屬機關으로 사회복지관을 신설하여 동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지구내 신내4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토록 하려는 것이며, 95년 市立大 학부에 도시사회복지과, 도시행정대학원에 도시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었기에 市立大學校에서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신내4 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市立大學校가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신설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同 改正條例案을 出席委員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이상